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등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2026. 9. 17.

공주시

기획감사실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등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Ⅰ.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26. 8. 24. ~ 8. 28. (5일간)
○ 수감대상 :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의당보건지소
○ 감사범위 : 2023. 7. 1. ~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 1개반 7명(기획감사실장 외 6명)
○ 감사 중점사항
- 예산, 회계 등 기관 운영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출장, 휴가,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 여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방치 등 직무태만 행위
- 공사 및 용역 설계 적정성 및 공사 시공 사후 관리실태
- 기타 업무 전반의 문제점 및 민원 발생 등

Ⅱ. 감사 결과

○ 행 정 상

(단위 : 건)

계	본 처 본			현지처분		비고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시 정	주의/개선	
35	10	19	1	2	3	-

○ 재 정 상

(단위 : 원)

구 분	계	환 수	부과·징수	감 액	지 급
계	**4,184,200**	4,104,200	80,000	0	0
본 처 분	4,104,200	4,104,200	-	-	-
현지처분	80,000	-	80,000	-	-

○ 신 분 상

(단위 : 명)

계	중징계	경징계	문책(훈계)	문책(주의)	비 고
10	-	-	1	9	

○ 지적사항 총괄

1) 본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명/건/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계	환수·징수	감액
계	**30건**	**0**	**10**	**10**	**19**	**1**	**4,104,200**	**4,104,200**	**0**
1	청사 소방안전관리 소홀				1				
2	정기재물조사 추진 소홀				1				
3	☆☆☆☆센터 운영 관리 소홀				1				
4	이륜자동차 등록 업무 부적정			1					
5	관용차량 관리 소홀			1					
6	보통예금통장 관리 소홀			1					
7	비공무원 채용 관리 소홀				1				
8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1		1				
9	이장수당 지급 소홀				1				
10	일시사역 근로자 관리 소홀				1				
11	지출품의 과리 및 계약정보 공개 소홀				1				
12	인부임 및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1			1			
13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1				
14	회계서류 증빙 미흡				1				
15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3	1			3,599,000	3,599,000	
16	건설공사 폐기물처리비 정산서류 확인 소홀			1			209,000	209,000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업무 소홀				1				
18	환경보전비 계상 업무 소홀				1				
19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1				
20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검토 소홀				1				
2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4		1				
22	말소자 인감대장 처리 소홀				1				
23	인감변경 신고 관리대장 작성 소홀			1					
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업무 소홀			1			25,000	25,000	
25	전입(재등록)신고 사후확인 소홀				1				
26	정부관리양곡 대금관리 업무 소홀				1				
27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실태 점검 소홀		1		1				
28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 업무 소홀			1					
29	여비 지급 소홀			1			271,200	271,200	
30	일반농기계 사후관리 소홀			1					

2) 현지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명/건/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계	환수·징수	감액
계	**5건**	**0**	**0**	**2**	**2**	**1**	**80,000**	**80,000**	**0**
1	수입인지 매입 소홀			1			80,000	80,000	
2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 업무처리 소홀				1				
3	법정부담금 계상업무 소홀				1				
4	건설공사 설계도서 검토 의무 소홀					1			
5	구제역 백신 배부대장 관리 소홀			1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청사 소방안전관리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1】 소방안전관리 현황

연도	소방계획서 수립	자위소방대 편성	소방훈련(교육) 실시	비고
2023년	**수립(4.17.)**	**편성**	**1회 실시**	
2024년	**수립(7.19.)**	**편성**	**미실시**	임시청사 (11.25)
2025년	**미수립**	**미편성**	**미실시**	임시청사
2026년	**미수립**	**미편성**	**미실시**	임시청사

나. 위법·부당사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또한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의 제1항에 의하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생략-

○ 그러나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표 1】과 같이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계획(자위소방대 편성 포함)을 수립하고,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임시청사로 이전한 후 2025년과 2026년에는 소방계획 미수립뿐만 아니라 직원 인사이동을 반영한 자위소방대 편성도 하지 않았고, 2024년 이후에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전혀 실시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정기재물조사 추진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정기재물조사 추진 현황

연도	자체 추진계획 수립 여부	결과보고서 제출일자	비고
2023년	**미수립**	**2023.10.04.**	
2024년	**수립(6.11.)**	**미제출**	
2025년	**수립(6.11.)**	**미제출**	
2026년	**수립(6.23.)**	-	

나. 위법·부당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재물조사 등)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정기재물조사)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른 매 1년 단위의 재물조사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물조사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별 특수성을 감안한 물품관리관별 세부조사계획 수립·시행하라고 되어 있어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매년 정기재물조사 추진계획을 공문 발송하여 추진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 그러나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표】와 같이 감사대상 기간에는 정기재물조사에 대한 자체 추진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총괄부서인 회계과로 결과보고서를 2024년과 2025년에는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통하여 철저한 재물조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센터 운영 관리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센터 운영 보고(제출) 현황

연도	연간 운영계획	운영 결과보고서	☆☆☆☆회 심의 여부
2023년	**미보고**	**미보고**	**부**
2024년	**미보고**	**미보고**	**부**
2025년	**미보고**	**미보고**	**부**
2026년	**보고(2026.4.20)**	-	**부**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회 실시 및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보고)에 의하면 제1항에 읍면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읍면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 마지막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표 1】과 같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회의 심의가 없었으며,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또한 2026년에는 ☆☆☆☆회의 심의 없이 2026월 4월 20일에 연간 운영계획만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공주시 ☆☆☆☆회 실시 및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이륜자동차 등록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표 1】 이륜자동차 신고 건 전자수입인지 전자소인 미처리 현황

연도	계	사용신고	신고사항 변경신고	비고
계	**93건**	**80건**	**13건**	
2023년	**20건**	17건	3건	
2024년	**46건**	40건	6건	
2025년	**16건**	13건	3건	
2026년	**11건**	10건	1건	

나.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따르면 제1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으면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

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런 신고사항의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에는 3,0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전자적 소인) 제1항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자는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 그러나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표 1】과 같이 이륜자동차 신고 접수 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총 **80건**(2023년 17건, 2024년 40건, 2025년 13건, 2026년 10건)과 신고사항 변경 신고는 총 **13건**(2023년 3건, 2024년 6건, 2025년 3건, 2026년 1건)에 대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징구하면서 전자적 소인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인지세법」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미사용 처리된 93건에 대하여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자적으로 소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관용차량 관리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차량정비대장 미입력 현황

정비내역				정비대장 등록여부	비고
품의일	내　　용	사 용 처	금 액(원)		
15건					
20230706	관용차량(a) 수리비 지급	Ⓐ의당점	50,000	부	
20230814	관용차량(a) 수리비 지급	Ⓐ의당점	58,560	부	
20230814	관용차량(b) 수리비 지급	Ⓐ의당점	165,000	부	
20230818	관용차량(b) 수리비 지급	Ⓑ자동차지정정	62,200	부	
20230822	관용차량(a) 수리비 지급	Ⓐ의당점	835,000	부	
20230911	관용차량(c) 수리비 지급	Ⓒ밧데리	143,000	부	
20240521	관용차량(a) 수리비 지급	Ⓓ	43,000	부	
20240912	관용차량(a) 수리비 지급	Ⓔ주식회사	286,350	부	
20250723	관용차량(d, 봉고) 수리비 지급	Ⓐ의당점	1,090,530	부	
20250725	관용차량(a) 수리비 지급	Ⓓ	537,830	부	
20251001	관용차량(c, 산불차) 수리비 지급	Ⓔ주식회사	132,000	부	
20251024	관용차량(b, SM3) 수리비 지급	Ⓐ의당점	20,000	부	
20251212	관용차량(a) 수리비 지급	Ⓔ주식회사	704,000	부	
20260112	관용차량(d, 봉고) 수리비 지급	Ⓕ공업사	55,000	부	
20260220	관용차량(a, 모닝) 수리비 지급	Ⓓ	51,150	부	

○ 차량정비대장 부적정 입력 현황

정비내역			금액(원)		비고
품의일	내 용	사 용 처	e호조	정비대장	
5건			2,364,190	2,465,127	
2024-04-02	관용차량(d) 수리비 지급	Ⓕ공업사	308,000	480,000	
2024-09-30	관용차량(c, d) 수리비 지급 결의	Ⓕ공업사	1,309,000	1,190,000	
2025-02-17	관용차량(a, 모닝) 수리비 지급 결의	Ⓖ세차장	404,800	474,800	
2025-04-16	관용차량(d) 수리비 지급 결의	Ⓐ	46,600	60,000	정비대장 사용처 : Ⓗ공업사
2025-05-21	관용차량(a, 모닝) 수리비 지급 결의	Ⓐ외1	295,790	260,327	정비대장 사용처 : Ⓓ

※ 출처 : 새올행정시스템 차량관리 시스템-운행일지·차량정비대장, 이호조시스템 발췌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기록관리)에 따르면 제8호 서식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2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 3. 차량유류수불대장 4. 차량운행일지 5. 차량정비대장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 제1항 각 호의 대장을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한다.

➪ 그런데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3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5건에 대하여 차량수리 후 차량 정비대장에 기록관리 하지 않았고, 5건에 대하여는 정비대장 기록은 하였으나 실제 지출액과 금액 등을 상이하게 기록하여 기록물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공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누락된 차량 정비대장을 기록하여 관용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보통예금통장 관리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의당면 보통예금 관리 현황

개설일자	회계 구분	계좌번호	계좌명	통장직인	비고
1996.01.12	일반	E	보통예금 (일반지출)	의당면지출원인	
1996.05.09.	일반	F	보통예금 (세입세출외현금)	의당면세입세출외 출납원인	2026.2.부터 양곡대금 통합
2001.11.02.	일반	G	보통예금 (카드&전기요금 자동이체)	의당면지출원인	
1994.08.20.	일반	H	보통예금 (민원실제증명수수료)	의당면지출원인	중간수입금출납원 공인 미사용

나. 위법·부당 내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2(계좌의 개설·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별표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1. 계좌개설, 1-2(최소 승인・관리)에 따르면 수입금・세입세출외현금 중간수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출납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또한, 2024. 6. 17. 보통예금계좌 총괄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는 회계과-21853(2024.6.1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공주시 보통예금계좌 정비를 추진하였고, 당시 총괄부서의 방침은 수입금 중간수납용 계좌를 사용하는 부서는 수입금출납원 지정을 필수로 하였고, 회계과-22393(2024.6.19.)호에 따라 전부서에 수입금 중간수납용 계좌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였다.

⇒ 이에 의당면 행정복지센터는 민원실 제증명 수수료 관리 계좌에 대하여 중간수납수입금출납원 통장으로 적의 신고 및 수입금출납원 지정하였으나, 이후 해당 통장에 대하여 적절한 공인을 제작하여 날인 하지 않고 기존 방식에 따라 의당면지출원인 직인을 사용하여 계좌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민원실 카드수수료 입금통장에 대해 지정한 중간수입금 출납원 공인을 제작하여 해당 직인을 날인한 통장을 재발급받아 관리하는 등 보통예금통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비공무원 채용관리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자체 채용 및 가족채용제한여부 확인서 미징구 현황(25. 7. 이후 채용 건)[1)]

일련번호	사업명	채용기간	채용인원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징구 여부	비고
	8건		**220**		
1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 기간제	2025.9.1.~9.30.	1	X	
		2026.7.1.~8.31.	1	해당없음	공개모집
2	농정사업 신청접수 전담 도우미	2026.2.1.~4.30.	1	X	
3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전담 도우미	2026.5.1.~6.30.	1	X	
4	국토공원화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 예초작업 등)	2025. 상시	86	X	
		2026. 상시	108	X	
5	자치계획형 사업 기간제	2026.5.7.~12.11.	1	해당없음	공개모집
6	산불감시원 채용	2025.11.1.~12.15.	9	해당없음	공개모집
		2026.2.2.~5.15.	9	해당없음	공개모집
7	임업직불제 기간제근로	2025.10.13.~12.19.	1	O	
8	하절기 방역	2026.6.1. ~ 9.30.	2	해당없음	공개모집

1)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개정 시행일 기준(25. 7. 1.)

나. 위법 · 부당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가족채용제한) 및 공주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에 따라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채용대상자에게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이는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9조(채용 구비서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도 적용된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제외

➪ 그럼에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5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 등 5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자체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채용시험 실시 등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제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공주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역

지출 사유	지출금액(원)	대상인원	사용일자	예산과목	부적정내용	지급명령번호
13건	**2,865,850**					
행정복지센터 내방객 제공 특산품 구매비 지급	600,000	20	2024-02-15	기관	명단 미첨부	00000043
2024년 직원 화합행사 만찬결의	514,000	19	2024-05-21	정원	명단 미첨부	00000260
당면업무 추진 직원 격려 및 화합을 위한 만찬비 지급 결의	440,000	20	2024-12-19	부서	지출문서 작성 부적정	00000574
의당면 당면업무 추진 직원 격려 만찬 결의	66,000	6	2025-03-06	부서	예산과목 부적정 (적정:기관)	00000109
의당면 당면업무 추진 직원 격려 오찬비 지급 결의	91,000	8	2025-04-16	부서	예산과목 부적정 (적정:기관)	00000224
2026년 읍면동 방문(시민과의 대화) 내방객 제공용 다과 구입비 지급 결의	74,000	미기재	2026-01-28	기관	대상인원 미기재	00000043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오찬 급식비 지급 결의	45,000	20	2026-01-28	부서	예산과목 부적정 (적정:기관)	00000035
2026년 읍면동 방문(시민과의 대화) 내방객 제공용 다과 구입비 지급 결의	31,850	미기재	2026-01-28	기관	대상인원 미기재	00000043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오찬 급식비 지급 결의	22,000	20	2026-01-28	부서	예산과목 부적정 (적정:기관)	00000035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 개막식 참석자 오찬 급식비 지급 결의	90,000	40	2026-02-04	기관	대상인원 부적정	00000060
당면업무 추진 직원 노고 격려를 위한 오찬 급식비 지급 결의	86,000	20	2026-04-07	부서	예산과목 부적정 (적정:기관)	00000185
당면업무 추진 직원 격려 오찬 급식비 지급 결의	80,000	20	2026-04-13	부서	예산과목 부적정 (적정:기관)	00000186
2026년 의당면 직원화합 행사 추진비 지급 결의	726,000	20	2026-04-24	정원	명단 미첨부	00000188

나. 위법 · 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 시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특히,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2의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총 13건(2,865천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대상인원 미기재, 부서업추비로 일부직원 급식(적정 예산과목 : 기관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지출하면서 명단 미첨부, 지출문서 작성 부적정 등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이장수당 지급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이장 기본수당 지급일 부적정

연번	지급일자	공무원 보수일	지연일 (조기 지급일)	비고
1	2023-07-27	2023-07-20	7	
2	2024-01-22	2024-01-19	3	
3	2024-03-15	2024-03-20	5	
4	2024-06-19	2024-06-20	1	
5	2024-08-21	2024-08-20	(-1)	
6	2024-10-17	2024-10-18	1	
7	2025-07-10	2025-07-18	8	

나. 위법·부당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통 · 리 · 반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4조(실비변상)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그럼에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장 기본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보수지급일(20일)에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장 기본수당 6건에 대하여 최소 1일, 최대 8일 지연하여 지급하였고, 1건에 대하여 1일 조기 지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일시사역 근로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일시사역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2026. 8. 27. 기준)

일련번호	사역연도	사 업 명	사역인원	의무보험 가입여부		비고
				가입인원	미가입인원	
계			**336**	**154**	**172**	
1	2023 (7.~)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	39	0	39	
		농지이용실태조사 현장조사요원	18	0	18	
		호우피해 접수지원	2	0	2	
2	2024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	47	0	47	
		농지이용실태조사 현장조사요원	18	0	18	
3	2025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	61	17	44	
		국토공원화 예초작업	16	12	4	
		정안천변 잡목제거 및 예초작업	9	9	0	
		농지이용실태조사 현장조사요원	18	8	0	
4	2026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	78	78	0	
		메타세콰이아길 꽃길 조성	30	30	0	

* 출처 :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위법 · 부당내용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6호 “일용근로자” 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따라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기관은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의무보험 가입을 신고하여야 하며, 65세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3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꽃동네 새고을 가꾸기 등 2개 사업 사역인원 336명 중 172명에 대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고용보험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지출품의 관리 및 계약정보 공개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소액 계약 건 품의유형 위반 내역

대금지급일	건명	거래처	금액(원)	품의유형		비고
				현황	적절	
20230825	2023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1차)	I	34,815,000	일반	용역	
20230825	2023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3차)	J	26,895,000	일반	용역	
20230825	2023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2차)	K	17,490,000	일반	용역	
20231024	2023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6차)	I	8,910,000	일반	용역	
20231027	2023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7차)	K	12,870,000	일반	용역	
20231121	의당면 주민총회 무대제작 및 음향장비 임차	L 이벤트기획	2,695,000	일반	용역	
20231201	2023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10차)	K	2,640,000	일반	용역	
20231208	2023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8차)	J	4,070,000	일반	용역	
20231208	2023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9차)	I	5,170,000	일반	용역	
20231208	2023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11차)	I	2,640,000	일반	용역	
20231222	2023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12차) 지급	K	16,500,000	일반	용역	
20231222	2023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15차) 지급	M기계	6,600,000	일반	용역	
20231222	2023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13차) 지급	J	4,290,000	일반	용역	

20231222	2023년 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14차) 지급	Ⓝ	18,810,000	일반	용역	
20240125	2024년도 면 청사 렌탈서비스 (Ⓞ) 사용료 연납 지급	Ⓞ(주)	2,653,040	일반	용역	
20240426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홍보물품 구입결의 (장우산 등)	Ⓟ	2,362,800	일반	물품	
20240409	23.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1차) 지급	Ⓘ	21,175,000	일반	용역	
20240419	23.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2차) 지급	Ⓚ	18,480,000	일반	용역	
20240513	23.7월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임차료(3차)	Ⓝ	4,620,000	일반	용역	
20240529	2024년 의당면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장비임차(1차)	Ⓠ	15,400,000	일반	용역	
20240610	의당면 임시청사 예정 건물 전기 증설비 지급 결의	Ⓡ	3,327,500	일반	용역	
20240625	2024년 의당면 하상정비사업 장비임차료(1차) 지급	Ⓚ	14,300,000	일반	용역	
20240627	2024년 의당면 하상정비사업 장비임차료(2차)	Ⓢ	18,260,000	일반	용역	
20240711	2024년 의당면 한발대비 용수개 발사업 장비임차료(2차) 지급	Ⓘ	11,220,000	일반	용역	
20240628	의당면 임시청사 컨테이너 임대차 계약 결의	Ⓣ	3,960,000	일반	물품	
20240711	2024년 의당면 하상정비사업 장비임차료(3차)	주식회사 Ⓤ	10,120,000	일반	용역	
20240906	위풍당당 의당 로컬브랜드 CI(캐릭터) 활용 홍보물 제작	Ⓥ	3,069,000	일반	물품	
20240912	위풍당당 의당면 관광지도 및 홍보물 제작 결의	Ⓦ	3,000,000	일반	물품	
20241104	7.8.~10.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 장비임차(1차)	Ⓘ	10,450,000	일반	용역	
20240926	2024년 의당면 주민총회 무대 및 음향 임차 결의	Ⓛ 이벤트기획	3,135,000	일반	용역	
20240924	2024년 주민총회 및 주민화합행사 체험부스 운영 물품 구입 결의	Ⓧ외 2	2,850,000	일반	물품	
20241016	7.8.~10.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복구 장비임차료(2차)(7~8월) 지급결의	Ⓚ	12,320,000	일반	용역	
20241205	쾌적한 임시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시 화장실 수리수선 결의	(주)Ⓨ	3,040,000	일반	용역	
20241209	7.8.~10.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복구 장비임차료(2차)(9~10월) 지급결의	Ⓚ	6,930,000	일반	용역	
20241213	의당면 임시청사 행정장비 등 이전 및 케이블 연결 결의	주식회사 Ⓩ	2,510,000	일반	용역	
20241226	7.8.~10.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 장비임차(3차) 결의	Ⓙ	10,230,000	일반	용역	
20241205	의당면 임시청사 컨테이너 임차료 지급 결의	ⓐ	9,602,970	일반	물품	
20241211	의당면 임시청사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지급 결의	주식회사 ⓑ	3,960,000	일반	물품	
20241223	세천 및 마을안길 등 불편민원 해결을 위한 장비임차(1차)료 지급결의	Ⓚ	3,850,000	일반	용역	
20241223	7.8.~10.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복구 장비임차료(1차)(9~12월) 지급결의	Ⓘ	7,370,000	일반	용역	

20241227	청룡*리 ★★마을 놀이터 주변 가로수 전정을 위한 장비임차 지급 결의	Ⅰ외 1	2,420,000	일반	용역	
20250116	2025년도 면 청사 정수기 등 렌탈서비스(Ⓞ) 사용료 지급 결의	Ⓞ (주)	2,653,040	일반	용역	
20250113	의당면 임시청사 서고 및 창고용 컨테이너 임차료 지급 결의	ⓐ	12,210,000	일반	물품	
20250116	의당면 임시청사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지급 결의	주식회사 ⓑ	17,160,000	일반	물품	
20250122	2025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지급 결의	ⓒ (경비)외 1	3,223,000	일반	용역	
20250131	의당면 임시청사 창고 임차료 지급 결의	ⓓ	7,920,000	일반	물품	
20250619	의당면 임시청사 조성을 위한 차광막 구입·설치 결의	ⓔ	5,264,600	일반	물품	
20250612	2025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장비임차료 지급 결의	Ⓚ	10,780,000	일반	용역	
20250612	2024년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장비임차료 지급결의	Ⓝ미니 중기(Ⓠ)	8,470,000	일반	용역	
20250625	2025년 하상정비 장비임차료(1차) 지급결의	Ⓚ	18,040,000	일반	용역	
20250701	2025년 하상정비 장비임차료(2차) 지급결의	Ⓘ	18,920,000	일반	용역	
20250630	의당면 임시청사 서고 및 창고용 컨테이너 임차료(2차분) 지급 결의	ⓐ	12,210,000	일반	물품	
20251002	2025년 7월 ~ 집중호우 피해복구 (대교천 준설) 장비임차료 지급결의	ⓕ	20,350,000	일반	용역	
20251002	2025년 7월 ~ 집중호우 긴급복구 장비임차료 지급결의(Ⓘ 박현숙)	ⓖ	15,950,000	일반	용역	
20251023	2025년 의당면 주민총회 무대 및 음향장비 임차 결의	Ⓛ 이벤트기획	3,500,000	일반	용역	
20251124	의당면 임시청사 차광막 정리 및 화장실 등 비가림 시설 설치비 지급 결의	ⓗ건설	3,806,000	일반	용역	
20260112	2026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지급 결의	ⓒ	3,223,000	일반	용역	
20260112	의당면 임시청사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지급 결의	주식회사 ⓑ	18,480,000	일반	물품	
20260113	의당면 임시청사 서고 및 창고용 컨테이너 임차 결의	ⓐ	27,720,000	일반	물품	
20260130	의당면 임시청사 창고 임대차 계약 체결 결의	ⓓ	7,920,000	일반	물품	
20260727	2026년 하상정비사업(1차) 장비임차 지급결의	Ⓘ	20,460,000	일반	용역	
20260804	2026년 지방하천 보수유지 장비임차(1차) 지급결의	ⓘ기계	10,065,000	일반	용역	

나. 위법·부당 내용

○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1호서식까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 별지 제 40호 서식 ~ 제41-1호 서식은 각각 물품(기타)구입 지출결의서, 물품(기타) 구입 승낙사항, 공사(용역)집행(수리・수선) 지출결의서, 공사(용역)집행(수리・수선) 승낙사항으로, 이에 따라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는 계약서 작성이 생략된다 하여도 제반 서류는 갖추어야 한다. 이는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또한, 「지방계약법」 제43조(계약과정의 공개)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 중략 -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 · 감독 · 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소액 계약 건에 대하여 품의 유형을 위반하여 계약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인부임 및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개　선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기간제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현황

대상자	사업명	근로기간	비고
16명	봄철 산불감시원 채용 등	3개월(90일) 이상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현황

지급연도	지급일자	지급내용	대상자	소득종류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율	비고
	8건						
2024	2024-09-20	2024년 의당면 주민총회 강사(풍선아트) 강사 수당	*비공개*	사업	90,000	3.3	동일인 기준 상이
2025	2025-11-05	2025년 의당면 주민총회 및 주민화합행사 강사(풍선아트) 강사수당	*비공개*	-	90,000	0	
2024	2024-12-12	의당면 ☆☆☆☆회 선진지 견학 강사 수당	*비공개*	기타	120,000	8.8	하한 미만 부과
2025	2025-09-25	2025년 9월 다문화가족 행복모임 프로그램 강사수당	*비공개*	기타	120,000	8.8	
2025	2025-09-25	2025년 9월 다문화가족 행복모임 프로그램 강사수당	*비공개*	기타	90,000	8.8	
2025	2025-11-07	2025년 다문화가족 상호문화이해교육 강사수당	*비공개*	-	50,000	0	동일인 기준 상이
2025	2025-10-27	2025년 다문화가족 상호문화이해교육 강사수당	*비공개*	-	50,000	0	
2025	2025-09-15	2025년 다문화가족 상호문화이해교육 강사수당	*비공개*	사업	50,000	3.3	

나. 위법 · 부당내용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에 따라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소득세 종류별 구분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한 금액 없음)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 지급액 × 8.8% 원천징수(125,000원 이하는 원천징수 X)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 퇴직시 원천징수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같은 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항 4호에 따라 100분의6으로 한다[2)]

※ 일 총급여액이 18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없음

➪ 그럼에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3년 7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봄철산불감시원 채용 등의 사업으로 16명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면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회 및 다문화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 세율을 적용하면서 하한금액을 지키지 않거나, 동일인에게 사업소득을 부과했다가 이후에는 부과하지 않는 등 일관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지급하는 인부임 및 강사수당에 대하여 적절한 기준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적의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추가 징수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의 소득·세액공제 없음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의당면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작성 현황(2026. 8. 기준)

연도	신용카드 사용부 작성	전자문서 보고 (월1회)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부 작성	비고
2023	X	O	O	
2024	X	X	O	
2025	X	X	O	
2026	X	X	X	현금영수증카드 미사용

○ 2백만원 초과 카드결제 내역(부가세 포함 2,200천원 초과 건)

사용일자	건명	사용처	금액(원)	비고
2024-04-12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사업 홍보물품 구입결의(장우산 등)	P	2,362,800	수의계약 서류 미첨부 품의유형 위반
2024-11-29	의당면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이전 알림 현수막 등 제작 결의	L	2,233,000	
2025-01-08	2025년도 면 청사 정수기 등 렌탈서비스(O) 사용료 지급 결의	O (주)	2,653,040	

나. 위법·부당 내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고의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사용부를 작성하거나 e호조에서 월별 사용내역을 추출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월 1회 내부결재할 수 있다.

○ 또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시에는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지출이 가능하며,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의당면에서는 2024~2026년도 기간 동안 신용카드 사용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면서 전자결재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8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1호서식까지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별지 제 40호 서식 ~ 제41-1호 서식은 각각 물품(기타)구입 지출결의서, 물품(기타) 구입 승낙사항, 공사(용역)집행(수리·수선) 지출결의서, 공사(용역)집행(수리·수선) 승낙사항으로, 이에 따라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하여는 계약서 작성이 생략된다 하여도 제반 서류는 갖추어야 한다. 이는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그럼에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

하여 200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220만원 초과) 금액을 결제하면서 계약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회계서류 증빙 미흡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회계서류 증빙 미흡 내역

지급명	기간	지급건수	증빙자료	부적정내용	비고
○○회의 참석수당	2023.7.~2026.8.	38	서명부	회의 결과보고 혹은 회의록 미첨부	
☆☆☆☆회의 참석수당	2024.9. 2025.10. 2025.12.	3	서명부		
☆☆☆☆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	2026.5.~7.	3	일일출근부	부서장(검토자) 확인 결재 득하지 않음	

나. 위법·부당 내용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1항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

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2항에 따라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관계법령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지급절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위원회 참석 서명부
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
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
4. 사전심사, 실비 및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 읍면동 소속 이·통장협의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해당 조례 적용범위에 포함되며 ☆☆☆☆회의 경우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별도 지급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상기 조례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그럼에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회의참석수당 및 인부임을 지급함에 있어 총 38회 ○○회의 회의참석 수당, 총 3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결과보고서나 회의록을 첨부하지 않고 참석부만으로 회의수당을 지출하고, 총 3회 ☆☆☆☆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지급하면서 확인자 및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은 출근부를 첨부하여 지출하는 등 회계서류의 증빙이 미흡하여 정당한 채권 금액을 증명할 수 없음에도 집행하여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에 대한 신용도를 저해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3,599,000원(환수)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공 사 명	공사내용	도급액(천원)		증감	공사기간	지적내용	도급자
		계약	정산				
합　계	6건	89,308	85,716	-3,599			
ㅊㅊ*리, ㄱㄱ리 배수로 설치공사	벤치플륨관 L=86m	17,400	16,646	-769	23.11.09.~ 23.11.24.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A
ㅇㅇ리(***) 마을안길 재해복구공사	옹벽블럭 L=16m 등	14,720	14,064	-649	23.11.10.~ 23.12.07.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B
ㅈㅈ리(**길) ㄹㄹ1리 배수로 설치공사	벤치플륨관 L=106m	14,575	13,909	-666	24.02.20.~ 24.03.27.	크레인 미사용	C
ㅊㅊ지구 농로 및 마을안길 보수공사	측구수로관 L=52m	10,253	9,683	-570	24.12.13.~ 25.01.12.	유로폼 미설치	D
ㅈㅈ리(**-9) 농로 확장공사	옹벽블럭 L=35m 등	12,710	12,200	-509	25.03.19.~ 25.04.20.	지게차 미사용 등	C
ㅊㅊ7리(***) 조경수 식재 및 환경정비공사	교목식재 13주 등	19,650	19,214	-436	26.04.21.~ 26.05.18.	수목굴취 미완료	E

나. 위법·부당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45조 및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위임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또한, 설계 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내역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되면 이를 검토·확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시정보고 하고,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상기와 같이 【ㅊㅊ2리, ㄱㄱ리 배수로 설치공사】외 5건을 추진하면서 교통안전시설 및 건설장비(크레인,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집수정(타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설계도서에 반영된 사항을 적정하게 시공·사용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 서류를 접수하였고, 상기 공정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가 공사비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절차 없이 부당하게 공사비 **금3,599천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낭비 및 시설물의 품질관리 등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건설공사 설계 및 공사 감독시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에 따라 설계의 검토 및 건설공사 감독(준공)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과다하게 지급된 건설공사 6건의 합계 금3,599,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폐기물처리비 정산서류 확인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209,000원(환수)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공 사 명	공사내용	도급액(천원)		증감	공사기간	지적내용	도급자
		준공금액	정산				
합　계	1건	13,600	13,391	-209			
ㅅㅅ리(***)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설치 L=86m 등	13,600	13,391	-209	2026.03.27.~ 2026.05.18.	폐기물처리비 정산 소홀	F

나. 위법·부당사항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을 작성하고 처리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7조(폐기물 처리비의 산출기준 등)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계상된 처리비를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하지만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ㅎㅎ리(***-*) 농로정비공사】를 준공하면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유무 및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

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나, 설계도서 내역과 폐기물처리 확인서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폐기물처리 완료필증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절차 없이 부당하게 폐기물처리비 금209천원을 지출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건설사업 추진 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폐기물처리비 등을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산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된 건설공사에 대한 **금209,000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업무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도급금액				공사기간	도급사
		예정가격	합계	도급액	관급액		
합　계	2건	40,600	39,760	22,830	16,930		
ㅅㅅ리(●●●) 경관등 설치공사	경관등 119EA 설치	20,600	20,290	10,120	10,170	2023.09.13.~ 2023.09.20	S
ㅈㅈ리(**-9) 농로 확장공사	옹벽블럭 L=35m 등	20,000	19,470	12,710	6,760	2025.03.19.~ 2025.04.20.	C

나. 위법・부당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2020.01.23.)」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예정가격 기준)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ㅅㅅ리(●●●) 경관등 설치공사】외 1건을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따른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건설공사 추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을 계상하여 건설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환경보전비 계상 업무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공 사 명	공사개요	총 사업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사
합　계	**47건**	**1,211,742**		
ㅅㅅ리(●●●) 경관등 설치공사	포장 A=240㎡	31,060	2023.09.13.~ 2023.10.10.	*비공개*
ㅊㅊ*리, ㄱㄱ리 배수로 설치공사	옹벽 L=42m	22,800	2023.11.09.~ 2023.11.24.	*비공개*
ㅎㅎ리 농로 포장공사	배수로 L=64m	22,900	2023.10.04.~ 2023.10.31.	*비공개*
ㅎㅎ리 마을안길 사면 보강공사	아스콘 A=1,880㎡	32,700	2023.10.04.~ 2023.10.13.	*비공개*
ㅎㅎ리(***-2) 배수로 재해복구사업	옹벽재설치 L=16m	31,220	2023.10.25.~ 2023.11.14	*비공개*
ㅅㄱ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포장 L=200m	24,020	2023.10.24.~ 2023.11.09	*비공개*
ㅎㅎ리(***-10) 사면 재해복구사업	옹벽 L=53m	22,130	2023.10.24..~ 2023.11.20.	*비공개*
ㄱㄱ리(***-1) 마을안길 재해복구사업	전석 L=22m	26,000	2023.10.30.~ 2023.11.26.	*비공개*
ㄱㅇ리(***-1) 사면 유실 재해복구사업	배수로 L=44m	26,000	2023.11.13.~ 2023.12.10.	*비공개*
ㅎㅈ2리(**) 세천 재해복구사업	포장 A=60㎡	36,150	2023.11.10.~ 2023.12.07	*비공개*

ㅊㅊ1리 ○○마을 마을안길 정비사업	배수로 L=60m	24,020	2023.11.13.~ 2023.11.23.	*비공개*
ㅁㅁ리(***-2,**-1) 세천 재해복구사업	포장 L=55m	26,000	2023.12.26.~ 2024.03.11.	*비공개*
ㅁㅁ리(**1) 마을안길 재해복구사업	배수로 L=82m	24,500	2023.11.27.~ 2023.12.22.	*비공개*
ㄱㅇ리(**-1) 사면 유실 재해복구사업	블록 L=27m	31,790	2023.11.13.~ 2023.12.10.	*비공개*
ㅅㅅ리(**골) 배수로 설치공사	포장 L=100m	31,770	2024.02.20.~ 2024.03.20.	*비공개*
ㅅㄱ리(ㅅㄱ골) 배수로 설치공사	옹벽 L=22m	28,500	2024.02.20.~ 2024.03.24.	*비공개*
ㅎㅎ2리(*골) 농로 포장공사	PE관 L=29m	23,500	2024.02.20.~ 2024.03.21.	*비공개*
ㅊㅊ2리(***길) 농로 확포장공사	포장 A=270㎡	21,000	2024.02.20.~ 2024.03.25.	*비공개*
ㄱㅇ리(ㄱㅇ**길) 농로 확포장공사	석축 L=40m	30,780	2024.02.20.~ 2024.03.24.	*비공개*
ㄱㄱ리 마을안길 가각부 포장공사	옹벽 L=28m	23,600	2024.02.21.~ 2024.03.27.	*비공개*
ㅇㅇ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옹벽 L=30m	28,740	2024.02.21.~ 2024.03.27.	*비공개*
ㅊㅊ5리, ㅊㅊ7리 배수로 설치공사	옹벽 L=52m	25,210	2024.02.16.~ 2024.03.25.	*비공개*
ㄷㅁ리(*골) 농로 포장공사	옹벽 L=20m	29,300	2024.03.07.~ 2024.04.08.	*비공개*
ㅅㅅ리(***-1) 마을안길 재해복구사업	포장 L=72m	23,300	2024.03.11.~ 2024.04.23.	*비공개*
ㅊㅅ2리 농로 보수공사	옹벽 L=50m	36,400	2024.03.11.~ 2024.04.11.	*비공개*
ㄱㅇ리(**) 사면 유실 재해복구사업	포장 L=72m	21,717	2024.03.11.~ 2024.05.03.	*비공개*
ㅊㅅ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포장 L=59m	23,300	2024.04.17.~ 2024.05.16.	*비공개*
의당면 임시청사 환경개선(리모델링)	배수로 L=146m	24,900	2024.07.01.~ 2024.07.28.	*비공개*
24년 주민생활밀착사업 (ㄹㅇ리 경관조성 공사)	아스콘 A=540㎡	47,300	2024.03.21.~ 2024.04.17.	*비공개*
의당면 ㅊㅊ2리(**-2, ***-2) 농로포장공사	배수로 L=180m	23,100	2025.03.07.~ 2025.04.09.	*비공개*

의당면 ㅇㅇ리(***-1)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배수로 L=98m	20,000	2025.03.07.~ 2025.04.10.	*비공개*
ㅅㅅ리 및 ㅊㅊ5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PE관 L=30m	30,600	2025.03.07.~ 2025.04.09.	*비공개*
의당면 ㄹㅇ2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78m	25,300	2025.03.18.~ 2025.04.17.	*비공개*
의당면 ㅈㅇ리(**-90) 농로 확장공사	리모델링 1식	24,200	2025.03.19.~ 2025.04.20.	*비공개*
의당면 ㅁㄷ리(***) 배수로 정비공사	아스콘 A=1,300㎡	26,600	2025.04.01.~ 2025.05.01.	*비공개*
의당면 ㅁㄷ리(***) 농로 정비공사	포장 L=36m	21,150	2026.03.11.~ 2026.04.09.	*비공개*
의당면 ㅊㅅ1리(***-2) 배수로 정비공사	수로관 L=100m	25,280	2026.03.11.~ 2026.04.14.	*비공개*
의당면 ㅈㅈ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배수로 L=150m	22,900	2026.03.11.~ 2026.04.14.	*비공개*
ㅍㅍ1리(***-5, ***-1)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옹벽 L=37m	21,000	2026.03.11.~ 2026.04.08.	*비공개*
의당면 ㅋㅋ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옹벽 L=35m	22,340	2026.03.11.~ 2026.04.13.	*비공개*
의당면 ㅌㅌ1리(***) 세천정비공사	포장 L=28m	21,470	2026.03.18.~ 2026.04.20.	*비공개*
의당면 ㅁㅅ리(***-1) 배수로 정비공사	포장 L=65m	23,300	2026.03.18.~ 2026.04.19.	*비공개*
ㅊㅊ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포장 A=105㎡	23,550	2026.03.19.~ 2026.04.19.	*비공개*
ㅎㅎ2리(***-101) 배수로 설치공사	전석 L=27m	20,900	2026.03.23.~ 2026.04.22.	*비공개*
ㅎㄷ리(***-2) 농로정비공사	옹벽 L=30m	24,250	2026.03.24.~ 2026.04.22.	*비공개*
ㅅㅅ리(***) 배수로 정비공사	포장 L=113m	23,630	2026.03.27.~ 2026.04.26.	*비공개*
ㅊㅊ7리 (***) 조경수 식재 및 환경정비	배수로 L=40m	11,565	2026.04.21.~ 2026.05.18.	*비공개*

나. 위법·부당사항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에 따라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비용(환경보전비 등)은 공사 원가에 반영하

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및 사업비 산정 시 이를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ㅅㅅ리(●●●) 경관등 설치공사】외 46건을 추진하면서「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진동 저감 등 환경오염 방지 및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비를 공사 원가(도급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건설공사 추진 시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비용을 계상하여 건설사업장 내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구 분		정기 검사(4월, 10월)			만료검사(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비 고
		대 상	검 사	미검사	대 상	검 사	미검사	기 한 미준수	
계		**996**	**991**	**5**	**168**	**32**	**136**	**0**	
2023년	상반기	133	133	**0**	0	0	**0**	-	
	하반기	158	155	**3**	37	3	**34**	-	
2024년	상반기	177	177	**0**	36	2	**34**	-	
	하반기	141	141	**0**	19	1	**18**	-	
2025년	상반기	142	142	**0**	29	11	**18**	-	
	하반기	137	136	**1**	23	5	**18**	-	
2026년	상반기	108	107	**1**	24	10	**14**	-	
	하반기	-	-	-	-	-	-	-	

나. 위법·부당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이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행안부 예규 제231호)「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11절(공사목적물의 하자)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 (기타사항) 정기검사 : 4월(상반기), 10월(하반기) 실시(회계과 관련 공문 참고)

➪ 그럼에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하자검사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141건(정기검사 5건, 만료검사 136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보수를 시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의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추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검토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금액 : 천원)

연번	공사명	공사내용	도급금액	공사기간	도급사	현장대리인	비고
	합　계	28건	184,946				
1	ㄱㅇ리(***) 마을안길 재해복구사업	옹벽블럭 쌓기 H=1.5m L=6m	14,720	2023.11.10. ~ 2023.12.07.	*비공개*	*비공개*	
2	ㄱㅇ리(**.1) 사면 유실 재해복구사업	옹벽블럭 쌓기 H=2.5m~3.5m L=24m	20,740	2023.11.30. ~ 2023.12.26.	*비공개*	*비공개*	
3	2023년생활민원사업 (39차)[ㅊㅊ1리]	옹벽블록쌓기 L=12m	13,600	2023.12.26.~ 2024.03.11	*비공개*	*비공개*	
4	ㅁㄷ리(***.*,**.*) 세천 재해복구사업	석축 찰쌓기 H=1.0m~2.5m L=32m	16,800	2023.12.13.~ 2023.12.27.	*비공개*	*비공개*	
5	ㅊㅊ2리, ㄱㅇ리 마을안길 재해복구사업	전석 쌓기 H=2m L=5m	18,700	2023.12.13.~ 2023.12.27.	*비공개*	*비공개*	
6	ㅎㅎ2리(*골) 농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L=140m	30,910	2024.02.20.~ 2024.03.21	*비공개*	*비공개*	
7	ㅈㅈ리(ㅂㅂ골), ㄹㅇ1리 배수로 설치공사	벤치플륨관(800B) 벤치플륨관(600C)	21,795	2024.02.20.~ 2024.03.27	*비공개*	*비공개*	
8	ㅊㅊ1리 ○○마을 마을안길 정비사업	인도 철거 및 콘크리트 포장 A=150㎡	16,550	2024.02.21.~ 2024.03.24	*비공개*	*비공개*	
9	ㅁㅇ리(* 골) 농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B=3m) 및 플륨관 설치(300C)	14121	2024.03.07.~ 2024.04.08	*비공개*	*비공개*	
10	ㅎㅎ1리(***골) 농로 확포장공사	옹벽블록쌓기(H=0.5~2m) L=28m 및 콘크리트 포장 A=22㎡	17,010	2024.03.07.~ 2024.04.10	*비공개*	*비공개*	
11	ㅎㅎ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석축쌓기(H=1.6~2m) L=20m 등	15,936	2024.03.07.~ 2024.04.17	*비공개*	*비공개*	

연번	공사명	공사내용	도급금액	공사기간	도급사	현장대리인	비고
12	ㅊㅅ2리 농로 보수공사	석축쌓기(H=0.6m) L=42m, 콘크리트 포장 A=85㎡	24,240	2024.03.11.~ 2024.04.11	*비공개*	*비공개*	
13	ㄱㅇ리(**) 사면 유실 재해복구사업	옹벽블록쌓기(H=2.5m) L=26m	28,121	2024.03.11.~ 2024.05.03	*비공개*	*비공개*	
14	ㅊㅎ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A=411㎡	12,426	2024.04.17.~ 2024.05.16	*비공개*	*비공개*	
15	의당면 ㄱㄱ리(***.7) 농로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B=3.0m, L=112m	12,414	2025.03.07.~ 2025.04.08	*비공개*	*비공개*	
16	의당면 ㅇㅇ리(***.1) 마을안길 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A=75㎡, 옹벽블록쌓기 L=30m	15,950	2025.03.07.~ 2025.04.10	*비공개*	*비공개*	
17	의당면 ㅈㅇ리(**.9) 농로 확장공사	콘크리트포장 A=62㎡, 옹벽블록쌓기 L=35m	12,710	2025.03.19.~ 2025.04.20	*비공개*	*비공개*	
18	의당면 ㄹㅇ1리(ㅊㅅ리 ***)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B=2.0m) L=121m	11,510	2025.03.24.~ 2025.04.24	*비공개*	*비공개*	
19	의당면 ㅁㄷ리(***) 배수로 정비공사	흄관매설(D=1,L=40m, 콘크리트포장(B=4. L=40m	19,570	2025.04.01.~ 2025.05.01	*비공개*	*비공개*	
20	ㅊㅊ1리(***.5, ***.1)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아스콘덧씌우기 (t=5cm) A=830㎡	20,160	2026.03.11.~ 2026.04.08	*비공개*	*비공개*	
21	의당면 ㄱㅇ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 A=52㎡, 옹벽블록쌓기L=23m	23,817	2026.03.11.~ 2026.04.13	*비공개*	*비공개*	
22	의당면 ㅊㅅ1리(***.2) 배수로 정비공사	아스콘덧씌우기 (t=5cm) A=230㎡	22,752	2026.03.11.~ 2026.04.14	*비공개*	*비공개*	
23	의당면 ㅅㅊ2리(***번지) 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아스콘덧씌우기 (t=5cm) A=1130㎡	20,623	2026.03.11.~ 2026.04.14	*비공개*	*비공개*	
24	ㄱㅇ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아스콘덧씌우기 (t=5cm) A=560㎡	17,950	2026.03.18.~ 2026.04.22	*비공개*	*비공개*	
25	ㅊㅊ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아스콘덧씌우기 (t=5cm) A=1200㎡	21,445	2026.03.19.~ 2026.04.19	*비공개*	*비공개*	
26	ㅎㅎ2리(***.***) 배수로 설치공사	콘크리트포장 A=10㎡, 수로관설치L=100m	21,470	2026.03.23.~ 2026.04.22	*비공개*	*비공개*	
27	ㅎㄷ리(***.2) 농로정비공사	콘크리트포장(B=4m) L=37m, 콘크리트포장 (B=1.4m) L=10m	21,818	2026.03.24.~ 2026.04.22	*비공개*	*비공개*	
28	의당면 ㄹㅇ리(**.5)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옹벽돌쌓기, 플륨관	16,510	2026.03.24.~ 2026.04.23	*비공개*	*비공개*	

나. 위법·부당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으로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술인의 배치 시 공사 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이면서 동일한 시·군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또는 시·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에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ㄱㅇ리(***) 마을안길 재해복구사업】외 27건의 공사를 착공하면서 계약업체의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에 대한 발주자의 검토·승낙 없이 동일 공사기간 동안 1인의 건설기술인을 2개소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향후 건설공사 발주 시 현장대리인 배치 등 건설기술인에 관한 착공 서류 검토 및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건)

구분	계	2023년 (7. 1. ~)	2024년	2025년	2026년 (~ 8. 21.)	비고
위임장 확인·수리 부적정 (위임일자, 위임사유, 관계 등)	**67**	8 (워드 1, 수정액 1)	36 (수정액 사용 2)	15 (수정액 사용 1)	8 (수정액 사용 2)	
위임장 재사용 방지 조치 미흡 (접수인, 발급일자, 발급번호)	**다수**	**2023년 ~ 2026년 전체**				
발급대장 작성·관리 소홀 (발급번호, 대리인, 발급통수 등)	**다수**	2	다수 (발급번호x)	다수 (발급번호x)	다수 (발급번호x)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2023. 7. 2. ~ 2026. 8. 21.)

나. 위법·부당사항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및 행정안전부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는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은 본인 확인, 위임장의 신청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초일 포함)이며,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워드프로세서로 입력하거나 복사본 위

임장은 수리 불가하다.

○ 또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위임장 및 동의서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시행령 별지 제15호 서식]에 발급내역을 기재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윗면을 가리개나 흰 종이로 가린 후에 대리인의 무인을 받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발급통수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받아 발급통수 정정에 대한 근거를 확보(비고란 활용)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대장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며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고, 법 제5조에는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인감증명서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위임장의 경우 인감 사고 시 위임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서 문서 감정의 대상이 될 때가 많으므로 발급기관에서는 본인확인, 위임장의 신청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2023. 7. 1.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의당면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임장에 위임일자, 위임사유, 위임인과의 관계 등이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관한 확인 없이 발급한 건이 67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후에는 위임장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조치(접수인, 발급번호, 발급일자 표시)하여야 함에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 전체에 걸쳐 발급번호, 발급일자 표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 전체에 걸쳐 발급번호 기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인감증명법」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의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말소자 인감대장 처리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명)

구분	인감 말소자						
	합계	사망신고 말소	11호 통보	거주불명 등록	국적상실 말소	직권말소	기타
합계	**191**	**180**	**0**	**10**	**1**	**0**	**0**
2023년	**45**	41	-	4	-	-	-
2024년	**62**	60	-	2	-	-	-
2025년	**56**	53	-	3	-	-	-
2026년	**28**	26	-	1	1	-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대상기간 2023. 7.. 1. ~ 2026. 8. 28.)

나. 위법·부당사항

○「인감증명법」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에 따르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실종선고가 있은 것을 안 때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보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2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인감을 말소할 때에는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라고 붉은 글씨로 표기한 후 관계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신고·신청에 따라 인감을 말소할 때에는 인감대장 비고란에 인감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말소신고”로 표기한 후 신청인의 무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인감증명사무편람」에 따른 말소자 인감대장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말소** : 인감대장의 비고란에 말소일자 및 사유, 말소신고를 표기하고 신청인의 무인을 받음

2) **직권말소** : 인감대장의 제1쪽 주소이동.사항란과 제2쪽 비고란에 직권말소 사유와 “00년 00월 00일 직권말소”를 붉은 글씨로 기재한 후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예시) 2025.8.14. 주민등록 직권말소의거 2025.8.14.인감직권말소. 담당자 : 홍길동 날인

➪ 그러나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말소자 인감대장 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말소자 인감대장을 처리할 때 사망신고·거주불명 등록 등 주민등록의 말소로 인한 인감의 말소는 직권말소에 해당하므로 인감대장에 말소일자 및 그 사유와 “직권말소”를 붉은 글씨로 표기하고 관계공무원의 서명·날인하였어야 함에도, 다수의 인감대장에 “0000. 00. 00. 사망 0000. 00. 00. 11호통보의거 사망말소 처리”표기 후 담당자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인감변경 신고 관리대장 작성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건)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8. 21.)
인감변경 신고관리 건수	**222**	35	68	69	50
일련번호 미기재	**103**	35	68	-	-
결재권자 결재 누락	**222**	35	68	69	50

나. 위법·부당사항

○「인감증명법」제1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인감 변경신고 수수료는 600원이다.

○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는 인감의 변경 시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첩부)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인감변경(방문 · 서면) 신고 관리대장 〉

결 재		일련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수수료첨부란
담당자	담 당				
					※ 전산입력필(담당자날인)

※ 전산입력필은 인감 수기대장 뿐만 아니라 인감전산시스템에도 변경신고 사항을 입력하라는 의미이며 "전산입력필"의 고무인을 새겨 찍던지 담당자가 자필로 기재하여도 무방

➪ 그러나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의 인감변경 신고대장 확인 결과 2023년, 2024년도에는 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2023년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결재권자의 결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인감증명법」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의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인감변경 관리대장에 현재 담당 팀장 결재와 전산입력필(담당자 날인)이 가능한 부분을 기재하여 주시고, 향후 대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업무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25,000원(환수)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원)

구　　분	합 계		2023년 (7. 1. ~)		2024년		2025년		2026년 (~ 8. 21.)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건	금액
계	30	155,000	0	0	9	45,000	12	65,000	9	45,000
면제 대상 재발급 수수료 징구	18	90,000	-	-	8	40,000	8	40,000	2	10,000
증지 소인 부적정(면제, 0원) (면제사유 X, 동의나 증명자료 X)	5	25,000	-	-	1	5,000	2	10,000	2	10,000
신청서 증지 소인액 과다	5	30,000	-	-	-	-	1	10,000	4	20,000
신청서 증지 소인액 부족	2	10,000	-	-	-	-	1	5,000	1	5,000

나. 위법・부당사항

○「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영 제32호서식)을 하여야 하고 증명청인 읍・면・동에서는 재발급 신청서 접수 시 재발급 수수료(5,000원, 집적회로칩 내장의 경우에는 10,000원)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

지로 징수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첨부하여 소인(또는 인증기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재발급 수수료의 면제는 주민등록증의 자연적인 결함(사진이나 글씨 등이 닳아 없어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 등 주소 외의 기록사항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이 부족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하고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해·재난·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과적 수술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보안 미적용 증(2006. 11. 1.이전 발급된 증)은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보안기능추가'로 선택하여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재발급 무료 사유에 해당하여 무료로 처리된 경우에도 기존 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분실로 간주하여 처리하고 발급된 주민증 수령 시 수수료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 또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수급자, 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신청서(영 제32호 서식)의 면제신청 체크 후 하단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받고 담당자가 규정에 따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정보이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수수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3. 7.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기존 증을 반납하고 재발급 사유가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됨에도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여 신청서에 소인한 건이 18건(90,000원), 재발급 사유가 면제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인의 정보제공동의나 증명서류가 없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신청서에 수입증지 소인이 수수료 면제 또는 0원으로 되어 있는 건이 5건(25,000원), 신청서 증지 소인액이 과다 또는 부족한 건이 7건(4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증 재발급 사유가 면제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인의 면제신청 및 정보 제공 동의나 증명서류 제출이 없음에도 신청서에 수수료 면제 또는 0원으로 증지가 소인된 5건에 해당하는 증지액 25,000원을 환수 조치하시고, 신청서에 소인액이 적정수수료보다 과다 또는 부족하게 소인된 7건에 대해 적정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를 신청서에 소인하여 보관하시기 바라오며, 「주민등록법」, 「주민등록 사무편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전입(재등록)신고 사후확인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구분	합계		관내		관외		비고
	명	세대	명	세대	명	세대	
2023년	295	246	57	41	238	205	
2024년	613	489	123	86	490	403	
2025년	565	469	100	81	465	388	
2026년	308	259	35	29	273	23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대상기간 : 2023. 7. 1. ~ 2026. 8. 21.)

나. 위법·부당사항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하며, 방문 및 인터넷(정부 2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따라 전입신고를 접수한 신거주지의 읍·면·동장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확인용 자료(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 서식)를 관할 이·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이·통장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서명(세대주(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확인용 자료의 확인자 의견란을 작성하여야 함)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통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후확인용 자료에는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읍·면·동 또는 출장소에서 받은 경우

2.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 그러나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재등록)신고 사후확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고 사후확인용 자료(이하 “사후확인서”라 한다)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거주 여부, 세대주(원) 서명, 담당자 서명, 확인자 의견(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 기재되지 않아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리)장 확인만 되어 있어 사실상 사후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후확인서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확인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기한 내에 사후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등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사후확인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정부관리양곡 대금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개, 천원)

구분	합계		기초생계,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등		
	신청수량	신청금액	가구수	신청수량	신청금액	가구수	신청수량	신청금액
2023년 (7~12월)	278	2,315	29	62	155	172	216	2,160
2024년	495	3,927	46	99	247	305	396	3,680
2025년	538	4,461	48	90	225	344	448	4,236
2026년 (1~8월)	254	3,060	32	60	150	222	291	2,910
합계	**1,565**	**13,763**	**155**	**311**	**777**	**1,043**	**1,351**	**12,986**

나. 위법·부당사항

○ 「양곡관리법」 및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보장 가구원 수 1인당 월 10kg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읍·면·동은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정부양곡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신청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 대금을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양곡 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상가구의 현금 급여 중 개인부담금을 공제 처리하고,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읍·면·동의 양곡대금 출납전용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기타 계좌이체가 가능한 방안(세입세출외현금계좌 활용, 자체 가상계좌 부여 등)을 마련하여 대상자에게 계좌이체 처리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회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수납금의 납입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 금고(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2조, 제29조, 제50조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서 같다)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 그러나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정부관리양곡 대금을 신청자에게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양곡대금 관리통장을 확인한 결과 현금으로 수납한 정부관리양곡 대금을 담당자가 보관하여 월별로 시에 납부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정부관리양곡 대금 수납 시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실태 점검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① 급여관리자 지정 현황(2023. 7. 1. ~ 감사일 현재)

성명	등록유형	주거유형	지정일자	점검주기		급여 관리자	급여관리자 유형
				연1회	반기별		
비공개	기타	병원	2012-07-10		o	*비공개*	2촌이내 직계존비속
비공개	기타	무료임차	2012-03-26		o	*비공개*	2촌이내 직계존비속
비공개	발달장애인	무료임차	2012-03-26		o	*비공개*	2촌이내 직계존비속
비공개	발달장애인	무료임차	2012-03-26		o	*비공개*	친인척
비공개	발달장애인	무료임차	2012-03-26		o	*비공개*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비공개	정신장애인	그룹홈	2024-07-12		o	*비공개*	친인척
비공개	발달장애인	무료임차	2017-01-04		o	*비공개*	기타
비공개	발달장애인	무료임차	2012-03-26		o	*비공개*	

② 급여관리실태 점검 현황

구분	관리대상자	급여관리자	최종 점검결과	점검조치입력	비고
2023년 하반기	*비공개*	*비공개*	적정	없음	
2024년	*비공개*	*비공개*	일부	영수증 지참	

상반기			부적정	교육 예정	
2024년 하반기	*비공개*	*비공개*	적정	없음	
2025년 상반기	*비공개*	*비공개*	일부 부적정	◎◎◎ 계좌로 입금한 3,000천원 환수요청	26년 4월 21일 2,900천원 환수
2025년 하반기	*비공개*	*비공개*	일부 부적정	농업협동조합 고액인출 내역 확인	
2026년 상반기	*비공개*	*비공개*	적정	없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위법·부당사항

○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 또는 연 1회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읍·면·동장은 수급자의 생활 실태 및 급여관리자의 급여 관리 실태(통장 소지자, 급여 주요 사용처, 현금인출 여부 및 수급자의 생계 등과 무관한 용도로의 급여 사용 여부 등)를 점검하고 점검과정에서 급여 부정 사용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등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 법정 대응을 하여야 한다.

○ 또한, 급여 사용 실태 점검 시에는 급여관리자 지정서, 통장 입출금 내역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서식39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자(본인) 점검표에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내용과 점검자(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와 확인자(읍면동장)를 적고 점검자와 확인자의 날인(서명)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급여관리자 지정 시 동의서 작성(서식 38호), 지정서 교부(서식 43호)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급여관리 사실 및 책임인지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서 서식에는 급여관리자 날인과 함께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확인자 란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의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표에 출금내역 및 영수증 등과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급여관리자 지정서가 대부분 증빙서류에 첨부되지 않았으며,

➪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경우에는 급여관리자의 부적정관리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점검표에 조치사항 등을 종합의견에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금인출, 계좌이체 후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거나, 특히 현금을 과도하게 인출[◇◇◇(급여관리자 ◆◆◆)]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급여가 대상자를 위해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급여관리자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 환수 등 보완 요구[□□□(급여관리자 ■■■)]한 사항에 대해 이후 점검에서 확인이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급여관리실태 점검 증빙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여 수급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고, 조치 후에는 점검표에 조치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관리하는 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신청 업무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망자	28	7	8	6	7
장제급여 지원	20	4	7	4	5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2023. 7. 1. ~ 2026. 8. 28.)

나. 위법·부당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라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는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보장기관에서는 수급자의 신고·신청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과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해서도 수급자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동사항 확인대상에는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종류, 급여액, 보장기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이 해당되고 이 중 사망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알림 기능으로 확인되는 사항으로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장제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수급자 변동사항 |

변동사항 확인 항목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알림 기능	처리할 일
거주지 변동	세대 전부	알림	신거주지에 관련자료 이송
	가구원 일부	알림 ※ 수동처리 가능	① 동일 보장가구 여부 판단 ② 전출대상자만 시스템에서 전출처리 ③ 시스템자동반영 후 보장가구원 재구성 및 소득인정액 재산정 - 전출자를 부양의무자로 변경등록
	미거주 (거주불명등록)	알림	거주 여부 등 확인 후 중지사유 해당할 경우 보장 중지 등 조치
가구원 변동	출생	×	①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② 해산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사망	알림	①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② 장제급여 신청 안내(기초생활)
	실종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말소	알림	잔여가구원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인정액 재산정
	결혼	×	가구원 추가 급여신청 안내 후 재판정
	이혼	×	보장가구를 분리하고 현 보장가구원에서 이혼대상자를 삭제(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판단하여 정리 등)
	출입국 내역	알림	* 사업별 지침에 따라 처리

➪ 따라서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의 사망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 유족에게 장제급여 제도를 안내하여 적기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해 2023년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지원대상 총 28명 중 20명(71.4%)에게만 장제급여가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수급자 유족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장제급여 신청기한이 남아있는 지원대상자 유족에게 장제급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 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여비 지급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271,200원(환수)

【지적내용】

가. 현　황

○ 월액여비 (초과)지급 현황

대상자	출장일	출장시간	지급현황(원)			비고
			지급액	적정지급액	과다지급액	
계	11명	20건	213,200	0	213,200	
비공개	2025. 5. 2.	1일	10,660	0	10,660	출장내역 미결재
비공개	2024. 1. 2.	1일	10,660	0	10,660	출장내역 미결재
비공개	23.12.2./23.12.8.	2일	21,320	0	21,320	출장내역 없음
비공개	23.12.2./23.12.3.	2일	21,320	0	21,320	출장내역 없음
비공개	2023. 8. 8.	1일	10,660	0	10,660	관할구역 외 출장
비공개	2024. 12. 11..	1일	10,660	0	10,660	관할구역 외 출장
비공개	2025. 5. 16.	1일	10,660	0	10,660	출장내역 미결재
비공개	23.12.2./23.12.3./23.12.7.	3일	31,980	0	31,980	출장내역 없음
비공개	2025. 5. 9. 26.2.3./26.2.9./26.6.8.	4일	42,640	0	42,640	출장보고 미결재 관할구역 외 출장
비공개	25.2.13./25.5.9.	2일	21,320	0	21,320	관할구역 외 출장
비공개	24.5.24./24.9.2.	2일	21,320	0	21,320	출장내역 없음

○ 국내여비 (초과)지급 현황

대상자	출장일	출장시간	구분	지급현황(원)			비고
				지급액	적정지급액	과다지급액	
계	3명	3건		101,000	43,000	58,000	
비공개	2023.08.04.	1일	관외	33,000	0	33,000	출장실시 결과 미첨부
비공개	2025.04.23.	1일	관외	34,000	21,500	12,500	공용차량 사용 시 일비 미감액
비공개	2025.04.23.	1일	관외	34,000	21,500	12,500	

나. 위법·부당사항

○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이하 월액여비)를 지급하되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 따르면 일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함에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출장내역이 없거나 출장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출장, 관할구역 외 출장, 공무용 차량을 이용한 출장에 여비 미감액 등 총 24건의 국내여비를 초과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과다 지급된 여비 271,200원을 환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일반농기계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의당면 행정복지센터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 일반농기계 사후관리대장 미작성 농기계 현황

연 도	지원대상자	농기계 명	지원금액 (단위:천원)	비고
계	5건		15,326	
2023년	*비공개*	농업용동력운반차	4,157	
2023년	*비공개*	농업용동력운반차	4,242	
2024년	*비공개*	트랙터용 로더	3,000	
2025년	*비공개*	농업용급유기	1,683	
2025년	*비공개*	농업용급유기	2,244	

나. 위법·부당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서는 중요재산의 범위로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를 규정하고, 농기계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주시에서는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500만원 이상의 농기계·장비의 경우 사후 관리기간을 5년으로, 500만원 미만의 경우 3년으로 정하였다.

○ 또한, 동 계획에서는 읍·면·동에서는 사업완료 시 지원받은 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보조받은 농기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그럼에도 의당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5건의 15,326천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하여 사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할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의당면장은

○ 앞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대장 작성이 누락 된 농기계를 등록하시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